

生命保險約款의 醫學的檢討 (特히 高度身體障害 3項, 4項을 중심으로)

興國生命保險株式会社

医長 尹秉鶴

A Study of Life Insurance Policy in insurance Medicine

Medical Director : Yoon, Byong-Hak, M. D.

I. 序論

生命保險은 世帶主가 死亡하였을 때 그一家의所得喪失 즉 經濟的損失을 補償하는 것을 目的으로 創案된 經濟制度이다.

그러나 所得喪失의 原因이 死亡에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災害나 疾病에 依해서도 高度身體障害(廢疾)를 永久히 남길 수 있고 이 高度身體障害로 因해서 死亡과 같은 經濟的損失을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被保險者가 高度身體障害狀態에 있을때에는 死亡과 같은 保險給與를 받도록 生命保險約款上에 明示되어 있다.

이 生命保險約款을 察定者の 獨自的인 判斷에 依해서 縮少 또는 擴大解釋을 하면 業界內에선 混亂이오고 契約者나 被保險者에게는 큰 不幸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高度身體障害의 範圍 또는 程度를 判定하는 實務者の 見解差異에서 오는 紛爭을 極少化하기 위해서 生命保險約款의 障害等級 分類 第1級 高度身體障害(廢疾)中에서 第3項과

第4項을 醫學的 適用面에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

II. 約款條文

生命保險約款 障害等級(分類)

第1級 高度身體障害(廢疾)

3項 : 中樞神經系 또는 精神에 뚜렷한 障害를 남겨서 平生 看護를 받아야 할때.

4項 : 胸腹部臟器에 뚜렷한 障害를 남겨서 平生 看護를 받아야 할때.

위의 生命保險約款의 障害等級과 同一하다고 認定되는 勞動部의 產業災害補償保險法 및 自動車保險 障害等級表는 다음과 같다.

產業災害 补償保險等級(表)

第1級 3項 : 精神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항상 介護를 要하는 者

4項 : 胸腹部臟器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항상 介護를 要하는 者

5項 : 半身不隨가 된 者

自動車保險 障害等級(表)

第1級3項：精神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언제나 他人의 看護를 必要로 하는 것

4項：胸腹部臟器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언제나 他人의 看護를 必要로 하는 것

生命保險約款條文에 產業災害補償保險法 또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險法條文과 같은 表現을 使用했다는데 根本的인 問題가 있다.

즉 產業災害補償保險法이나 自動車 損害賠償保險法의 適用은 業務上의 事由에 依한 負傷, 疾病, 廢疾(高度 身體障害)이기 때문에 이 事實을 證明할 수 있는 第3者의 證明이 있고 또 平均賃金의 279 日分의 年金支給 (本人希望에 따라 平均賃金의 1,340 日分의 一時金支給도 할 수 있음)이지만 生命保險의 경우 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 第3者의 證明을 얻는다는 것은 不可能하고 主契約保險金과 같은 金額을 一時支給하기 때문에 經營에 미치는 影響은 大端히 큰 것이다.

따라서 契約者の 發病時期 故意의인 告知義務違反等 詐病에 依한 逆選擇混入을 防止하기 위한 對策으로 廢疾(高度身體障害)條項의 解석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다.

III. 用語解說

①障害라 함은 業務上의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었을 때에 身體에 殘存하는 永久의인 精神 또는 肉體의 毀損(廢疾)狀態로 因하여 發生하는 勞動力의 喪失이나 減少를 말한다.

②治癒라 함은 負傷이나 疾病에 대한 治療效果를 더 以上 期待할 수 없고 또한 그 症狀이 固定된 狀態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즉 醫學上一般的으로 承認된 治療方法을 使用하여 療養하였으나 治療效果를 期待할 수 없는 狀態에 이르면 療養은 終了되며 療養의 終了時에 남은 症狀이 自然的 經過로 因하여 到達된다고 認

定되는 最終의 狀態를 症狀이 固定된 狀態라고 한다.

③平生 看護라 함은 항상 他人의 看護없이는 生命의 維持가 不可能한 狀態를 말하며 第3者가 항상 患者的 옆에 있으면서 食事의 攝取 排尿 排便 體動등 日常動作(即 衣服의 着脫 入浴 步行 起居등)을 補助하지 않으면 本人 스스로는 하등의 動作도 할 수 없는 狀態를 말하며 醫師가 치료를 中斷하면 生命의 維持가 不可能한 狀態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 “平生”이란 廢疾(高度障害)狀態가 死亡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回復의 可能性이 있는 것은 對象에서 除外된다고 해석되므로 被保險者の 年齡 職種등 諸般條件은 障害程度를 決定하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IV. 檢討內容

約款條文을 抽象적으로 解석하는 것은 簡單하지만 症狀의 具體的 認定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항상 他人의 看護없이는 生命의 維持가 不可能하다는 것은 소위 “植物人間的 狀態”라고 그 適用概念을 限定시키고 있다. 具體적으로는 이 植物人間의 條件으로,

- ①自己 스스로의 힘으로는 移動할 수 없다.
- ②自力으로는 食事할 수 없다.
- ③大小便是 失禁狀態에 있다.
- ④눈으로는 어떤 物件(品)을 추적하고 있으나 그 物件을 認識할 수 없다.
- ⑤意思疎通이 되지 않는다.

⑥목소리는 내지만 뜻있는 言語로서는 認定할 수 없다. 등의 全條件를 갖출 必要가 있으며 看護에 關한 基準은 다음 事項의 程度를 計量化해서 判定한다.

- ①食物의 攝取: 여러가지 形態의 食物을 自力으로 攝取할 수 있는가의 能力의 程度 (이때

使用할 수 있는 器具 食器 其他 補助具의 모양 무게등)를 判定한다.

② 排便·排尿：大小便의 排泄은 勿論 그 뒷 처리를 自力으로 할수 있는가 特殊補助器具의 必要性은 없는가 등 그 能力의 程度를 判定한다.

③ 上記 以外의 日常 生活動作：침대 위에서의 移動·起坐 坐位의 保持 침대 주변에서의 步行 衣服의 着脫, 入浴등의 動作이 自力으로 可能 한가의 程度를 判定한다.

④ 精神狀態：危險의 認識 善惡의 區別등 判斷力의 障害에 따라 監視看護가 必要한가의 여부를 判定한다.

精神障害에 對해서는 社會的으로도 施行되고 있는 精神衛生法에 基準을 두고 具體的인 痘名을 表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뚜렷한 精神障害라는 것은 生命維持에 必要한 日常生活 處理動作時 항상 他人의 看護를 要하는 程度인 경우로서 高度의 痴呆(치매)와 情意와 荒廢와 같은 精神症狀으로 常時 監視가 必要한 경우를 意味하며 精神障害가 있기 때문에 監視를 要한다는 理由만으로는 高度障害로 認定할 수 없다. 即 항상 監視 介助 또는 獨室隔離가 必要한 精神障害를 瘦疾(高度身體障害)이라 認定하는 데는 큰 問題가 있다.

精神障害는 先天性 遺傳性疾患을 原因으로 하는 것이 많고 만일 이것을 認定한다면 逆選擇을 助長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또 瘦疾(高度身體障害)에 한해서 精神障害를 寬大하게 取扱하면 他疾病과의 公平性이 缺如되고 生命保險本質論까지도 흔들리게 된다. 또 內因性 精神障害를 否認하고 外傷性만을 認定한다는 것도 瘦疾(高度身體障害)適用精神에 모순이 있다.

瘦疾의 條件을 常時 看護를 要하는 植物人間을 想定했던 嚴한 條件에서 計量化된 點數查定이 導入되고 있는 現在로서는 어느 程度 緩和된 느낌도 있다.

人工腎臟(血液透析)：慢性腎障害로서 血液의 人工透析을 하는 것도 高度 身體障害로 보지 않는다. (但, 平生, 常時 介護를 要하는 者는 別途查定을 要한다) 血液透析을 하지 않으면 尿毒症으로 死亡하게 되지만 血液透析을 하면 日常生活은 勿論 普通의 職業에도 從事할 수 있기 때문이다. 即, 血液透析을 最終的 治療法으로 보지 않고 腎臟移植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人工心臟 Pace-maker 도 裝着하면 日常生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高度身體障害로 認定하지 않는다. (但, 平生 常時 介護를 要하는 者는 別途查定을 要한다.)

V. 結論

約款은 生命保險契約에 關한 諸般事項의 基準이 되는 것으로서 그 解釋을 둘러싸고 醫學的 判斷을 必要로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社會情勢의 變化에 따라 Moral-Risk가 多發하고 約款解釋에 對한 紛爭은 增加하고 있다.

實務上의 問題點을 解釋하기 위해 約款을 檢討하였으나 數많은 契約者는 더 많은 保障을 要求할 것이며 紙付의 擴大는 臨床醫學의 發展에 따라 계속적으로 再檢討의 必要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保險医学会誌 第1卷 1984.
- 2) 保險医学会誌 第2卷 1985.
- 3) 日本保險医学会誌 第77卷 1979.
- 4) 日本保險医学会誌 第78卷 1980.
- 5) 日本保險医学会誌 第80卷 1982.
- 6) 日本保險医学誌 第81卷 1983.
- 7) 生命保險標準約款：財務部
- 8) 障害等級認定 및 判定要領：(勞動実務시리이즈
⑤)楊元植 編
- 9) 自動車保險損害查定実務：保險会社